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37

발의연월일: 2021. 5. 7.

발 의 자:정청래·정성호·송갑석

오영환 • 이상헌 • 강득구

장경태 · 양이원영 · 김승원

오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 기준 전 국민 80%(4,138만명)가 가입해 '제2의 건강보험'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음.

그러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계산서, 진단서 등 많은 항목의 서류를 계약자, 피보험자 등이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.

이에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 고하고자 함(안 제102조의6, 제102조의7, 제202조제3호의2 신설).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2조의6(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등) ① 실손의료보험(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) 계약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등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보험료 청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「의료법」 제21조 및 「약사법」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·절차 및 전송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2조의7(실손의료보험의 서류전송 위탁 등)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에 따라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·운영할 수 있으며, 해당 업무를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 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평원"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심평원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, 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02조의6에 따라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- ④ 심평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보관해서는 아니 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범위, 서류의 전송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02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02조의6(실손의료보험의 보험
	금 청구 등) ① 실손의료보험
	(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
	하는 상품을 말한다) 계약의
	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등은
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
	따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
	험료 청구를 위해 금융위원회
	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
	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
	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
	을 요청할 수 있다.
	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
	기관은 「의료법」 제21조 및
	「약사법」 제30조에도 불구하
	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
	에 따라야 한다.
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
	<u>청 방법·절차 및 전송비용 등</u>
	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
	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제102조의7(실손의료보험의 서류
	전송 위탁 등) ① 보험회사는

제102조의6에 따라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위한 전산시 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 며, 해당 업무를 「국민건강보 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 가원(이하 "심평원"이라 한다) 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심평원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, 요양기관 등이 참여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 며,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02조의 6에 따라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 ④ 심평원은 제1항에 따라 위 탁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와 자료를 제102조의6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용도 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아 니 된다.
- 5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범위, 서류의 전송 방법·절차

제20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3. (생 략)

1. ~ 3. (생 략 <u><신 설></u>

4. ~ 7. (생략)

	<u>등에</u>	관하여	필요한	사형	}은	대
	<u>통령</u>	령으로 🤇	정한다.			
제	202조	(벌칙)				
	1. ~	3. (현호	행과 같	음)		
	<u>3의2.</u>	제1023	돈의7제3	3항 또	든	제
	<u>4</u> 항	을 위반	한 자			
	4. ~	7. (현	행과 같	음)		